

의안번호	제940호
의결 연월일	2025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자	조성태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5년 4월 11일

# 충청북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(조성태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940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5년 4월 11일

발의자 : 조성태, 최정훈, 안지윤,  
김국기, 박재주, 안치영,  
오영탁

### 1. 제안이유

- 인용법령의 오기를 정정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인용법령의 법령 오기를 정정(안 제8조, 안 제10조, 안 제12조)
  - 「충청북도 건축조례」 → 「충청북도 건축 조례」
  - 「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 → 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
  - 「충청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」 → 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
-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정정(안 제8조)
  - 충청북도 건축위원회 → 충청북도건축위원회
- 운영상 미비점 보완(안 제10조, 안 제14조)
  - 공무원이 아닌 사람 삭제
  -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 → 충청북도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건축기본법」, 「건축기본법 시행령」
- 나. 관련부서 : 문화체육관광국 건축문화과

다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첨부제외사유서

라. 조례안예고 : 예고대상(의회 홈페이지 게시 예정)

## 제 호

### 충청북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「충청북도 건축조례」”를 “「충청북도 건축 조례」”로 하고, “충청북도 건축위원회”를 “충청북도건축위원회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”를 “위원에”로 “「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”를 “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 및”을 삭제한다.

제12조제2항 중 “「충청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」의 규정을”를 “「충청북도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」에”로 한다.

제14조의 제목 “(건축디자인 조정위원회)”를 “(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”를 “충청북도 건축디자인 조정위원회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위원회의 설치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「충청북도 건축조례」 제3조에 따라 설치된 <u>충청북도 건축위원회</u>에서 대행한다.</p> <p>제10조(수당 등) ① 위원회에 출석한 <u>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</u>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<u>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</u>」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·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② <u>제1항 및 제9조에 따라 관계전문가</u>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거나 자료 등을 요청한 경우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참석한 사람에게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사람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협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제12조(재정지원 및 감독) ① (생략)</p>	<p>제8조(위원회의 설치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「충청북도 건축 <u>조례</u>」 제3조에 따라 설치된 <u>충청북도건축위원회</u>에서 대행한다.</p> <p>제10조(수당 등) ① 위원회에 출석한 <u>위원</u>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<u>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</u>」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·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9조에 따라 관계전문가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거나 자료 등을 요청한 경우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참석한 사람에게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사람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협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제12조(재정지원 및 감독) ① (현행과 같음)</p>

략)

-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교부·정산·감독 등은 「충청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」의 규정을 따른다.

**제14조(건축디자인 조정위원회)**

- ①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두는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(이하 “조정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행과 같음)

-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교부·정산·감독 등은 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**제14조(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)**

- ①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두는 충청북도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(이하 “조정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## 관련법령 발취

□ 건축기본법 [법률 제18339호, 2021. 7. 27.]

제1조(목적) 이 법은 건축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무를 정하고 건축정책의 수립·시행 등을 규정하여 건축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삶의 영위와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본이념)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공동의 노력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.

1. 국민의 안전·건강 및 복지에 직접 관련된 생활공간의 조성
2.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조정하고 수용하며 경제활동의 토대가 되는 공간 환경의 조성
3. 지역의 고유한 생활양식과 역사를 반영하고 미래세대에 계승될 문화공간의 창조 및 조성

## 비용추계 첨부제외 사유서

### 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제4항(비용추계서 작성대상) 제1호

### ○ 사 유

- 본 개정조례안은 인용법령의 오기를 정정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.